

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40
- 나. 제 출 자: 이충현 의원 외 7명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개정이유

공개공지 내 흡연행위로 인한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각 호의 구역을 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안 제5조)
- 나. 금연구역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와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추가함. (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건강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4. 5. ~ 4. 10.) 결과: 의견있음

※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자 통제 불능으로 2차 민원 발생 우려되어 금연구역 지정반대 의견 -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의견서 및 입주직원 590명 연명부 제출 (의견내용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흡연행위로 인해 주변 거주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고 담배꽂초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개공지¹⁾와
- 기존의 조례에 빠져있었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5조제6호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제7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신설하며, 단서 조항으로 설치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는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1) 건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 부칙규정으로 금연구역 추가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위하여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개공지 내 흡연 행위로 보행자 및 주변 거주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꽂초 투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 안 제5조제6호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위험물취급소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제7호의 공개공지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인 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개공지의 경우 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유지이므로 사유재산 이용제한에 따른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안 제5조의 각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고 하는 만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주민의견과 관계 없이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일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규정사이에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며,
-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타 자치단체²⁾의 사례를 보면, 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해당 공개공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에서도 500㎡미만의 공개공지의 경우 시행규칙에 별도의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나, 500㎡이상의 공개공지의 경우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2020년 12월 말 현재 31개소) 공개공지 외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흡연으로 2차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흡연장소 제공 등의 대책마련과 함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금연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등포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TEL:02-2093-1011 FAX:2093-1020
문서번호: 제관2104-03

시행일자: 2021. 4. 9.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제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1.4.5.)와 관련입니다.
3. 현재 당 빌딩은 입주세대가 약 450세대, 주간 상주인원이 약 5,000명으로 금연빌딩으로 지정되어 건물 내에서 일체의 흡연금지로 공개공지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시 당 센터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다수의 흡연자가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 및 공개공지 이외의 인근의 도로주변, 아파트/주택/상가 주변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어 이 경우 더 큰 심각한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담배연기, 담배꽂초 무단투기, 가래침 뱉기, 담뱃불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등)
5. 이에 당 센터에서는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빌딩에 입주해있는 입주사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내용을 전달받아 반대의견을 제시 하오며 이에 대한 연명부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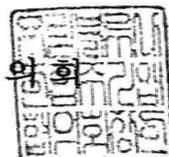
별첨: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입주사 직원 의견 연명부. -끝-
(정인중 외 589명)

* 접수된 연명부 원본은 의사림에서 확인 가능

2021년 4월 9일



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협의회



참고

강서구 공개공지 현황 (500㎡이상)

연번	행정동	번지	건물명	사용승인	주용도	연면적 (㎡)	공개공지 설치면적 (㎡)
1	가양동	50-5 외 6	서서울 모터리움	2013-12-23	기타	35,854.2	1,880.89
2	가양동	1498	강서 한강자이타워	2013-06-07	공장	99,647.4	1086.08
3	가양동	449-21	한화 비즈메트로 2차	2012-01-16	공장	29,029.3	1027.68
4	가양동	449-4 외 2	한화 비즈메트로 1차	2012-01-13	공장	45,788.4	1727.35
5	가양동	18-24	홈플러스 가양점	2000-10-10	판매시설	45,095.4	1277.82
6	가양동	449-19	가양 이마트 매장동	2000-02-28	판매시설	53,092.8	2355.8
7	내발산동	119 외 2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사옥 본관동	2002-02-21	업무시설	19,592.4	676.96
8	등촌동	638-3	강서 아이티밸리	2012-08-04	공장	23,728.5	946.13
9	등촌동	689 외 2	NC 강서점	2011-09-07	판매시설	110,026.6	804
10	등촌동	63-12 외 2	어워쉬 예다인 오피스텔	2008-08-08	업무시설	31,780.1	1035.21
11	방화동	886 외 6	SKY PARK	2011-11-15	판매시설	316,152.0	20233.65
12	염창동	240-21 외 1	우림 블루나인 비즈니센터	2008-09-26	공장	132,407.0	993.27
13	마곡동	797-1	(주)문영종합개발	2017-07-07	업무시설	69,223.38	700.91
14	마곡동	798 외1필지	(주)홈앤쇼핑	2017-02-28	업무시설	50,601.94	566.78
15	마곡동	760	한국자산신탁(주)	2017-02-24	업무시설	106,200.40	876.49
16	마곡동	776-2 외1필지	(주)대방디엠시티이주현	2017-01-04	업무시설	98,409.80	1118.46
17	마곡동	773-3	동익엠제이와이피에프브이주식회사	2017-03-16	업무시설	64,152.79	623.3
18	마곡동	757 외2필지	두산더랜드파크	2017-11-08	업무시설	59,614.3	711.95
19	염창동	266-12	한빛어반뉴스토리	2018-01-12	업무시설	11,215.7	700.98
20	마곡동	788 외1필지	코오롱미래기술원	2018-01-23	교육연구 시설	76,349.1	607
21	마곡동	766 외1필지	에스앤아이강서사옥	2018-02-06	업무시설	57,066.1	740.23
22	가양동	448-11 외2필지	가양글로벌퍼스트	2018-07-11	업무시설	8,782.9	555.59
23	등촌동	628-7 외1필지	아벨테크노 지식산업센터	2018-11-16	공장	29,927.49	762.46
24	마곡동	E1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2019-02-07	의료시설	220,179.85	3490.7
25	마곡동	776 외1필지	마곡 파크뷰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2019-03-12	업무시설	53,944.59	514.94
26	가양동	56-2 외5필지	강서 오토플러스 자동차매매센터	2019-07-31	자동차관련시설	95,589.65	699.42
27	가양동	54-6 외1필지	더리브 골드타워	2019-09-11	공장	35,780.50	899.7
28	마곡동	798-11 외1필지	가양 이마트 매장동	2019-02-07	의료시설	220,179.85	3490.7
29	화곡동	987-1 외3필지	매그넘797	2019-03-12	업무시설	53,944.59	514.94
30	가양동	187-7	마곡 파크뷰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2019-07-31	자동차관련시설	95,589.65	699.42
31	등촌동	656-57	마곡그랑트윈타워	2019-09-11	공장	35,780.50	899.7

※ 강서구 공개공지 전체 209개소 (2020. 12월 말 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 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